|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빙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8호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빙 관리를 강화하고 세법 집행을 규율하며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빙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발표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6월 6일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빙 관리방법  제1조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빙(이하 '세전공제증빙'으로 약칭) 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 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영수증 관리방법> 및 그 실시세칙 등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세전공제증빙이라 함은 기업이 기업소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과 관련된 합리적 지출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세전공제가 가능한 각종 증빙을 지칭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기업이라 함은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거주자기업과 비거주자기업을 지칭한다.  제4조 세전공제증빙 관리는 진실성, 합법성, 연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진실성이라 함은 세전공제증빙에 반영된 경제 업무가 진실적이고 지출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지칭한다. 합법성이라 함은 세전공제증빙의 형식•출처가 국가의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됨을 지칭한다. 연관성이라 함은 세전공제증빙이 그에 반영된 지출과 연관성이 있고 증명력을 갖추었음을 지칭한다.  제5조 기업은 실제로 발생한 지출과 관련된 세전공제증빙을 취득하여 기업소득세 과세표준액 산정 시 관련 지출을 공제하는 의거로 삼아야 한다.  제6조 기업은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당해 연도 귀속 연말정산기가 종료되기 전에 세전공제증빙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은 세전공제증빙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협의서, 지출근거, 지급증빙 등을 포함한 세전공제증빙 관련 자료를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세전공제증빙은 그 출처에 따라 내부증빙 및 외부증빙으로 분류한다.  내부증빙이라 함은 기업이 스스로 작성하여 원가, 비용, 손실 및 기타 지출의 결산에 사용되는 회계원시증빙을 지칭한다. 내부증빙의 작성과 사용은 국가의 회계 관계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부증빙이라 함은 경영활동 및 기타 사항 발생 시 기업이 기타 업체•개인으로 부터 취득하는 해당 지출의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지칭하며 영수증(종이 영수증 및 전자 영수증 포함), 재정영수증(財政票据), 세금완납증빙, 수금증빙, 분할증명서(分割單)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국내에서 발생한 기업의 지출 항목이 증치세 과세항목(이하 '과세항목'으로 약칭)에 해당되며 상대방이 세무등기가 이뤄진 증치세납세자인 경우 그 지출은 영수증(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한 영수증 포함)을 세전공제증빙으로 한다. 상대방이 법에 의거 세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업체이거나 소액•산발적 업무를 경영하는 개인인 경우 그 지출은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한 영수증 또는 수금증빙 및 내부증빙을 세전공제증빙으로 하되 수금증빙에는 수금업체의 명칭, 개인의 성명과 신분증 번호, 지출 항목, 수취 금액 등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소액•산발적 업무라 함은 개인이 과세항목에 해당되는 업무를 경영함에 있어 그 매출액이 증치세 관계 정책에 정해진 징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항목의 영수증 발행에 대하여 세무총국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서 정한 영수증(發票 또는 票据)을 세전공제증빙으로 한다.  제10조 국내에서 발생한 기업의 지출항목이 과세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기관•업체인 경우 기타 외부증빙을 세전공제증빙으로 한다.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내부증빙을 세전공제증빙으로 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기업의 지출항목이 과세항목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세무총국의 규정에 따를 때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경우 영수증을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업이 해외에서 화물 또는 용역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지출은 상대방이 발행한 영수증 또는 영수증 성격의 수금증빙, 관련 세금•비용 납부증빙을 세전공제증빙으로 한다.  제12조 무단 인쇄제작, 위조, 변조, 무효처리, 발행인이 불법으로 취득, 허위발행, 비규범적으로 작성 등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영수증(이하 '부적합 영수증'으로 약칭)과 국가의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타 외부증빙(이하 '기타 부적합 외부증빙'으로 약칭)을 기업이 취득하여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기업이 응당히 취득하여야 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적합 영수증, 기타 부적합 외부증빙을 취득하였고 그 지출이 진실적이며 실제로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 귀속 연말정산기가 종료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의 재발급•교체발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재발급•교체발급된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이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제14조 기업이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재발급•교체발급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말소•취소가 이뤄지거나 법에 따라 영업집조를 취소당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비정상경영자로 판정받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의 재발급•교체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거하여 지출의 진실성을 증명한 후 해당 지출을 세전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1)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 재발급•교체발급 불가능 사유 증명서류(공상등기 말소, 기구 취소, 비정상경영자 판정, 파산 공고 등 증명서류);  (2) 관련 업무 활동의 계약서 또는 협의서;  (3) 비현금 방식으로 이뤄진 지출의 지급증빙;  (4) 화물 운송 증명서류;  (5) 화물 입고•출고 내부증빙;  (6) 기업의 회계결산기록 및 기타 서류.  전 항 제(1)호 ~ 제(3)호의 서류는 필수서류에 해당된다.  제15조 연말정산기가 종료된 후 기업이 응당히 취득하여야 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적합 영수증, 기타 부적합 외부증빙을 취득한 사실을 세무기관이 발견하였고 기업에게 고지한 경우 기업은 고지가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내에 규정에 부합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재발급•교체발급받아야 한다. 상대방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의 재발급•교체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업은 고지가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출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이 소정의 기한 내에 규정에 부합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재발급•교체발급받지 못하였고 이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출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도 못한 경우 해당 지출을 발생연도에 세전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이 방법 제15조에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과거 연도에 응당히 취득하여야 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연도에 해당 지출의 세전공제가 이뤄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후 연도에 규정에 부합되는 영수증, 기타 외부증빙을 취득하였거나 이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출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 경우 해당 지출은 발생연도로 소급하여 세전공제가 가능하되 소급공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기업이 국내에서 기타 기업(관계회사 포함)•개인과 공동으로 증치세 과세대상 용역(이하 '과세대상 용역'으로 약칭)을 이용하고 발생한 지출을 할당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독립거래의 원칙에 따라 할당하여야 하며 기업은 영수증과 분할증명서를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하고 과세대상 용역을 공동 이용한 기타 기업은 기업이 발행한 분할증명서를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한다.  기업이 국내에서 기타 기업•개인과 공동으로 비(非) 과세대상 용역을 이용하고 발생한 지출을 할당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업은 영수증 이외의 기타 외부증빙과 분할증명서를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하고 비(非) 과세대상 용역을 공동 이용한 기타 기업은 기업이 발행한 분할증명서를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한다.  제19조 기업이 사무•생산용 건물 등 자산을 임차(기업이 단일 임차인으로서 임차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전기•가스•냉방•난방•통신선로•케이블TV•인터넷 등 요금에 대하여 임대인이 과세항목으로 인정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기업은 영수증을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할당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업은 임대인이 발행한 기타 외부증빙을 세전공제증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이 방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证管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28号  　　为加强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证管理，规范税收执法，优化营商环境，国家税务总局制定了《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证管理办法》，现予以发布。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8年6月6日  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证管理办法  　　第一条 为规范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证（以下简称“税前扣除凭证”）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简称“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及其实施细则等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税前扣除凭证,是指企业在计算企业所得税应纳税所得额时，证明与取得收入有关的、合理的支出实际发生，并据以税前扣除的各类凭证。  　　第三条 本办法所称企业是指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规定的居民企业和非居民企业。  　　第四条 税前扣除凭证在管理中遵循真实性、合法性、关联性原则。真实性是指税前扣除凭证反映的经济业务真实，且支出已经实际发生；合法性是指税前扣除凭证的形式、来源符合国家法律、法规等相关规定；关联性是指税前扣除凭证与其反映的支出相关联且有证明力。  第五条 企业发生支出，应取得税前扣除凭证，作为计算企业所得税应纳税所得额时扣除相关支出的依据。  　　第六条 企业应在当年度企业所得税法规定的汇算清缴期结束前取得税前扣除凭证。  　　第七条 企业应将与税前扣除凭证相关的资料，包括合同协议、支出依据、付款凭证等留存备查,以证实税前扣除凭证的真实性。  　　第八条 税前扣除凭证按照来源分为内部凭证和外部凭证。  　　内部凭证是指企业自制用于成本、费用、损失和其他支出核算的会计原始凭证。内部凭证的填制和使用应当符合国家会计法律、法规等相关规定。  　　外部凭证是指企业发生经营活动和其他事项时，从其他单位、个人取得的用于证明其支出发生的凭证，包括但不限于发票（包括纸质发票和电子发票）、财政票据、完税凭证、收款凭证、分割单等。  　　第九条 企业在境内发生的支出项目属于增值税应税项目（以下简称“应税项目”）的，对方为已办理税务登记的增值税纳税人，其支出以发票（包括按照规定由税务机关代开的发票）作为税前扣除凭证；对方为依法无需办理税务登记的单位或者从事小额零星经营业务的个人，其支出以税务机关代开的发票或者收款凭证及内部凭证作为税前扣除凭证，收款凭证应载明收款单位名称、个人姓名及身份证号、支出项目、收款金额等相关信息。  　　小额零星经营业务的判断标准是个人从事应税项目经营业务的销售额不超过增值税相关政策规定的起征点。  　　税务总局对应税项目开具发票另有规定的，以规定的发票或者票据作为税前扣除凭证。  　　第十条 企业在境内发生的支出项目不属于应税项目的，对方为单位的，以对方开具的发票以外的其他外部凭证作为税前扣除凭证；对方为个人的，以内部凭证作为税前扣除凭证。  　　企业在境内发生的支出项目虽不属于应税项目，但按税务总局规定可以开具发票的，可以发票作为税前扣除凭证。  　　第十一条 企业从境外购进货物或者劳务发生的支出，以对方开具的发票或者具有发票性质的收款凭证、相关税费缴纳凭证作为税前扣除凭证。  　　第十二条 企业取得私自印制、伪造、变造、作废、开票方非法取得、虚开、填写不规范等不符合规定的发票（以下简称“不合规发票”），以及取得不符合国家法律、法规等相关规定的其他外部凭证（以下简称“不合规其他外部凭证”），不得作为税前扣除凭证。  　　第十三条 企业应当取得而未取得发票、其他外部凭证或者取得不合规发票、不合规其他外部凭证的，若支出真实且已实际发生，应当在当年度汇算清缴期结束前，要求对方补开、换开发票、其他外部凭证。补开、换开后的发票、其他外部凭证符合规定的，可以作为税前扣除凭证。  　　第十四条 企业在补开、换开发票、其他外部凭证过程中，因对方注销、撤销、依法被吊销营业执照、被税务机关认定为非正常户等特殊原因无法补开、换开发票、其他外部凭证的，可凭以下资料证实支出真实性后，其支出允许税前扣除：  　　（一）无法补开、换开发票、其他外部凭证原因的证明资料（包括工商注销、机构撤销、列入非正常经营户、破产公告等证明资料）；  　　（二）相关业务活动的合同或者协议；  　　（三）采用非现金方式支付的付款凭证；  　　（四）货物运输的证明资料；  　　（五）货物入库、出库内部凭证；  　　（六）企业会计核算记录以及其他资料。  　　前款第一项至第三项为必备资料。  　　第十五条 汇算清缴期结束后，税务机关发现企业应当取得而未取得发票、其他外部凭证或者取得不合规发票、不合规其他外部凭证并且告知企业的，企业应当自被告知之日起60日内补开、换开符合规定的发票、其他外部凭证。其中，因对方特殊原因无法补开、换开发票、其他外部凭证的，企业应当按照本办法第十四条的规定，自被告知之日起60日内提供可以证实其支出真实性的相关资料。  　　第十六条 企业在规定的期限未能补开、换开符合规定的发票、其他外部凭证，并且未能按照本办法第十四条的规定提供相关资料证实其支出真实性的，相应支出不得在发生年度税前扣除。  　　第十七条 除发生本办法第十五条规定的情形外，企业以前年度应当取得而未取得发票、其他外部凭证，且相应支出在该年度没有税前扣除的，在以后年度取得符合规定的发票、其他外部凭证或者按照本办法第十四条的规定提供可以证实其支出真实性的相关资料，相应支出可以追补至该支出发生年度税前扣除，但追补年限不得超过五年。  　　第十八条 企业与其他企业（包括关联企业）、个人在境内共同接受应纳增值税劳务(以下简称“应税劳务”)发生的支出，采取分摊方式的，应当按照独立交易原则进行分摊，企业以发票和分割单作为税前扣除凭证，共同接受应税劳务的其他企业以企业开具的分割单作为税前扣除凭证。  　　企业与其他企业、个人在境内共同接受非应税劳务发生的支出，采取分摊方式的，企业以发票外的其他外部凭证和分割单作为税前扣除凭证，共同接受非应税劳务的其他企业以企业开具的分割单作为税前扣除凭证。  　　第十九条 企业租用（包括企业作为单一承租方租用）办公、生产用房等资产发生的水、电、燃气、冷气、暖气、通讯线路、有线电视、网络等费用，出租方作为应税项目开具发票的，企业以发票作为税前扣除凭证；出租方采取分摊方式的，企业以出租方开具的其他外部凭证作为税前扣除凭证。  　　第二十条 本办法自2018年7月1日起施行。 |